

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보다 나은 권익위

# 청탁금지법 교육 분야 간담회

>> 일 시 : '18. 11. 20.(화), 14:00 ~ 16:00

>> 장 소 : 대전 (한국철도공사 본사 대강당)



국민권익위원회



# 청탁금지법 교육 분야 간담회

## ■ 추진배경

- 교육 분야는 청렴성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고 공공기관 중 기관수\*가 가장 많아 청탁금지법 운영에 있어 중요한 위치  
\* 4만여개 공공기관 중 학교·학교법인은 총 23,350개로 최다('17.12월말 기준)
- 이에, 교육 분야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법 내용 및 제도운영 유의사항 전파, 의견수렴 등을 실시하여 법 이행력 제고 도모

## ■ 행사개요

- 일시·장소 : '18. 11. 20.(화), 14:00 ~ 16:00 / 대전 한국철도공사
- 참석대상 : 각급 학교(초·중·고·대학, 대학병원), 교육청 업무 담당자
- 주요내용 : 법 내용 및 판례 소개, 제도운영 유의사항 전파, 의견수렴 등

## ■ 세부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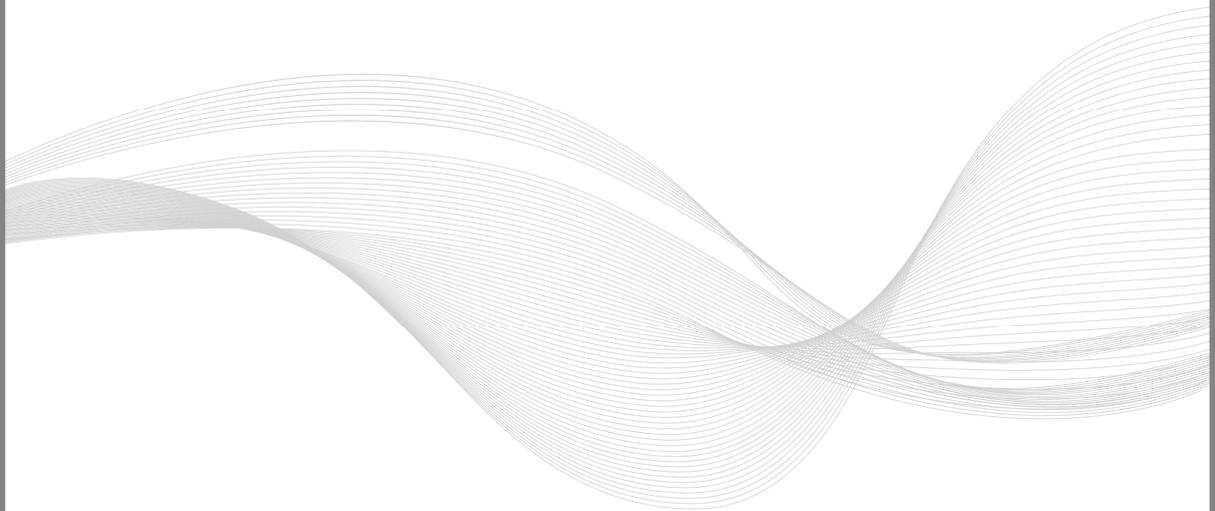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10	10'	참석자 등록 및 안내	청탁금지제도과
14:10~15:00	50'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사례 설명	
15:00~15:20	20'	제도운영 유의사항 전파	
15:20~15:50	30'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	참석자
15:50~16:00	10'	설문지 작성 및 폐회	

## ■ 행정사항

- 상시학습 : 참석자 2시간 인정(각급기관 참석자 통보 예정)



#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사례





# 청탁금지법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 
- I. 제정배경, 의의, 연혁
  - II. 주요내용
  - III. 제도운영 현황
  - IV. 시행 2년 성과
  - V. 판례
  - VI. 해석 사례
-

# I. 제정배경, 의의, 연혁

## 1. 청탁금지법의 제정 배경

### 청탁금지법 제정

부패문제의  
지속적 발생

부패행위 통제  
사각지대 존재

청렴도에 대한  
국제사회 평가

## 2. 청탁금지법 제정의 의의

국민 인식 전환

청탁·접대 거절의 근거

부패행위의 실효적 제재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

## 3. 청탁금지법 제정 연혁

2011~2012  
다양한 분야·계층  
의견 수렴

공개 토론회

대국민 설명회

전문 연구기관 연구

2012~2013  
공청회 및 논의과정을  
거쳐 정부안 마련·제출

정부 입법절차 진행

정부안  
국회 제출  
2013. 8. 5

2014~2015  
국회 심의 및 법안 공포

정무위원회 의결

법제사법 위원회  
의결

국회 본회의  
의결  
2015. 3. 3.

법안 공포  
2015. 3. 27

2016

청탁금지법  
시행  
2016. 9. 28.



청탁금지법은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바라는 국민들의 지지와 열망을 바탕으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수많은 논의과정을 거쳐 도출된 입법적 산물

---

## II. 주요내용

---

### 1. 개요



## 2. 적용대상



공적기능 수행하는 민간부문까지 포함

**공공부문**

공무원 / 공공기관 임직원 / 국·공립학교 교직원

**민간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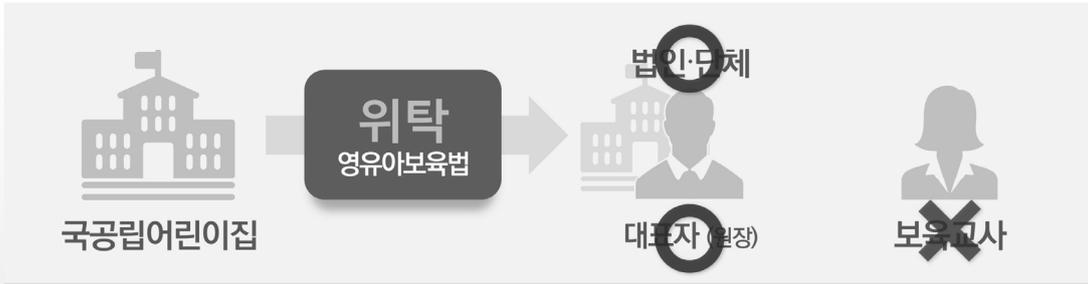
사립학교 교직원 / 언론인 / 공무수행사인

## 2. 적용대상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인은 법 적용대상 아님**  
민간인 사이 또는 공직자등이 민간인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제한하지 않음

## 2. 적용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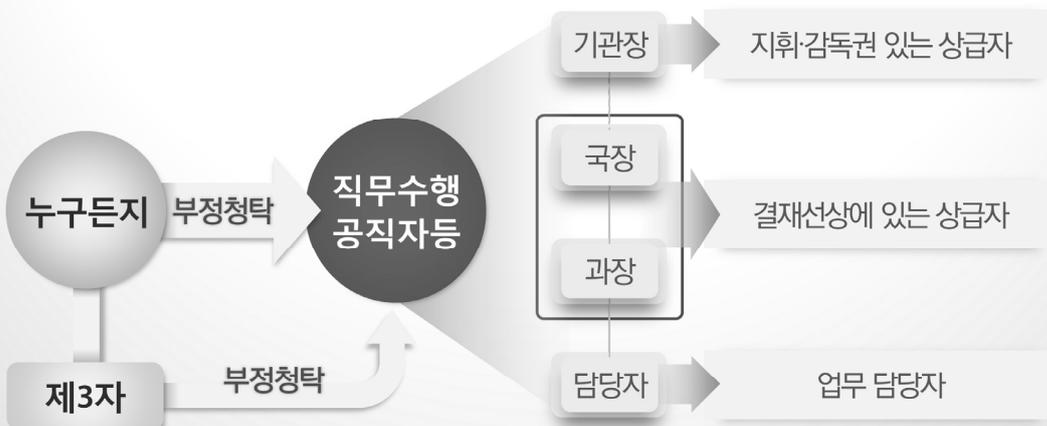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법인·단체 및 그 대표자 : 공무수행사인 O
- 법인·단체의 소속 구성원인 개인 : 공무수행사인 X

## 3. 부정청탁 금지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 수행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 인·허가, 행정처분 감면, 인사 개입, 입학·성적, 수사·재판 등



### 3. 부정청탁 금지 | 14가지 대상직무

1	인가·허가 등 처리	2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 감면
3	채용·승진 등 인사 개입	4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관여 직위 선정·탈락에 개입
5	공공기관 주관 수상, 포상 등 선정·탈락에 개입	6	입찰·경매 등 관련 직무상 비밀 누설
7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에 개입	8	보조금 등의 배정·지원 등에 개입
9	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용역의 사용·수익·점유 등	10	입학·성적 등 업무 처리·조작
11	병역판정검사 등 병역 관련 업무 처리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결과 조작 등
13	행정지도·단속·감사 결과 조작·묵인 등	14	사건의 수사·재판 등 업무 처리

### 3. 부정청탁 금지 | 예외사유

1.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른 요구
2. 공개적으로 특정 행위 요구
3.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의 민원 전달
4. 법정기한 내 업무 처리 요구
5. 사실확인과 증명 등 요구
6. 법령 또는 제도 등 설명·해석 요구
7.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 4. 금품등 수수 금지



직무 관련 여부 관계없이  
수수 금지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 금지

## 4. 금품등 수수 금지 | 예외사유

1 공공기관이나 상급 공직자가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

3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하는 금품등

4 공직자등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

5 직원상조회, 친목회 등의 기준, 장기적·지속적 친분에 따른 금품등

6 공식적인 행사에서 통상적,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

7 기념품·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해 받는 상품 등

8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 4. 금품등 수수 금지 | 예외사유(제2호)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 시행령 개정('18.1.17. 개정)

※ 유가증권을 선물의 범위에서 제외

	현행 (3·5·10)		변경 (3·5·5)
음 식 물	3만원	→	3만원
선 물	5만원	→	5만원 (단, 농수산물·가공품 10만원)
경조사비	10만원	→	5만원으로 하향 (단, 화환·조화 10만원)

## 5.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준

### 과태료 (최대 3천만원)

-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
-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
- 직무 관련 1회 100만원 이하 수수 공직자등과 제공자

### 형사처벌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
- 1회 100만원 초과 수수 공직자등과 제공자

## 외부강의등의 사전 신고

### 외부강의등

직무 관련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  
공청회 또는 회의 등

강의·강연·기고 등

### 외부강의등 신고

“대가 받지 않아도” 신고

“사전” 신고

사전신고 곤란하면  
2일 이내 사후 신고

국가·지자체 요청 시  
사전 신고 의무 없음

## 6.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연주회·전시회에서의 연주·공연·전시



시험출제위원으로서 시험문제 출제



회의 등이 아닌 용역·자문



법령(조례·규칙 포함)상 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회의 참석



소속기관장의 사전 검직허가를 받고 학교 출강



## 6.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 직무 관련 외부강의 시 사전신고의무
- 상한액 초과 사례금 수수 금지

구분	학교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1시간 상한액	100만원	40만원

## 6.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사례금 지급주체	강의일자	강의대상	강의내용 (주제)	각각 사례금 지급 여부
같음	같음	같음	같음	✕
같음	같음	같음	다름	○
같음	같음	다름	같음	○
같음	다름	같은지 다른지 불문		○
다름	같은지 다른지 불문			○

사례금 지급주체, 강의일자, 강의대상, 강의내용(주제) 중  
어느 하나라도 다르면 각각 사례금 수수 가능

## 7. 양벌규정

- 종업원 등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 다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주 면책

기업을 자율적인 반부패·청렴 노력이 형벌의 양형이나 과태료 가액 산정 시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민간부문의 청렴성 확보장치로 기능



법인·단체의 대표자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법인·단체 또는 개인

## 8. 위반행위에 대한 대응방법

**부정청탁을  
받았다면?**

거절의사  
명확히 표시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

**금품등을  
받았다면?**

지체 없이  
거절·반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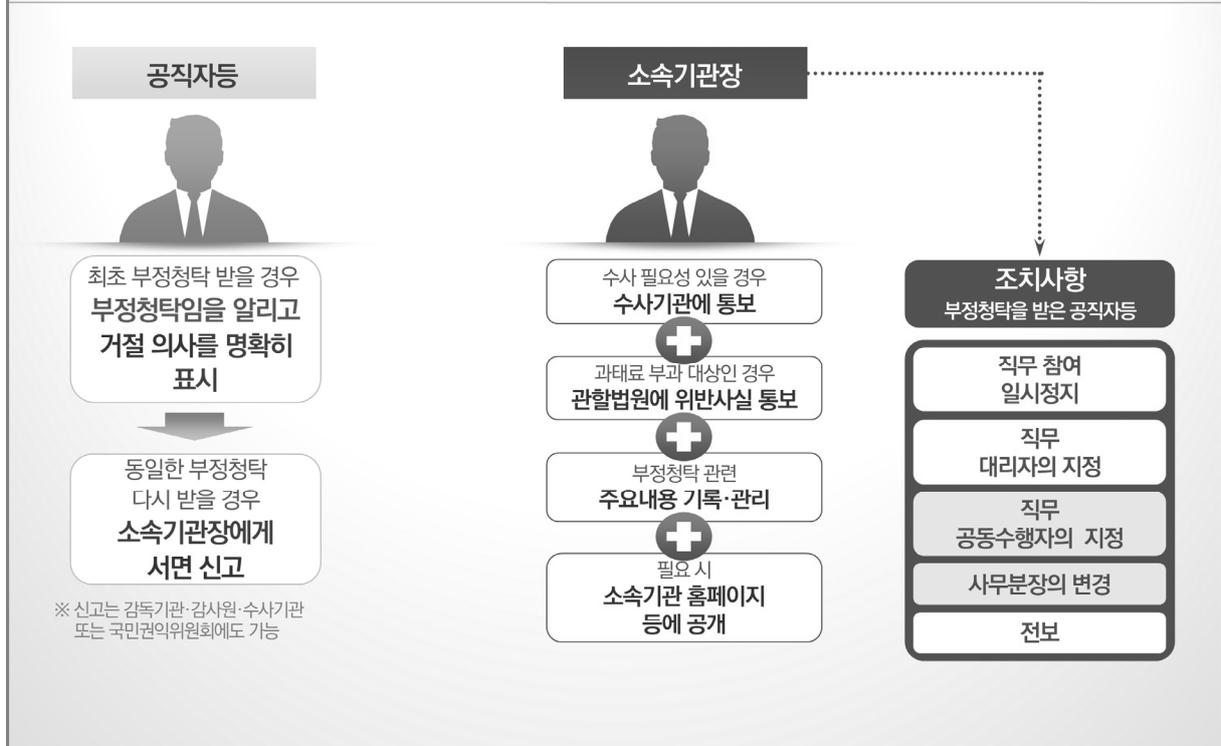
지체 없이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

**초과사례금을  
받았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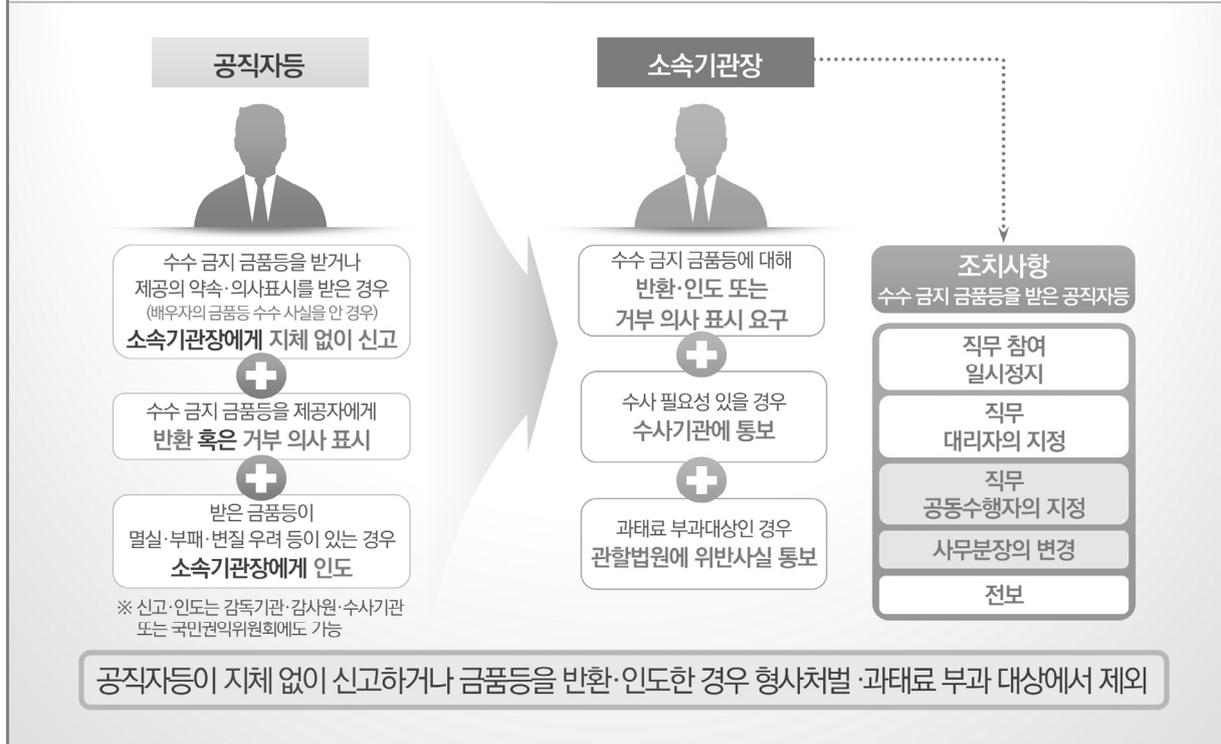
지체 없이  
반환

2일 이내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

## 9. 위반행위 신고방법



## 9. 위반행위 신고방법



## 9. 위반행위 신고방법



### III. 제도운영 유의사항

# 1. 엄정 처리 사례

## 신고사건의 적극적 처리로 솔선수범한 사례

- **소액 선물에 대해 과태료 부과 요청**
  - (사례) 공공기관의 사업을 수주한 법인 대표가 기관장에게 5만원 상당 사과를 제공  
→과태료 4배(20만원) 부과
- **법인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요청**
  - (사례) 민원 서류를 제출하면서 담당 공직자에게 현금 10만원을 제공한 업체 소속 직원과 업체 모두 과태료 20만원 부과
-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하여 직무배제 조치**
  - (사례) 청탁을 받고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채용계획'을 기안하며 채용조건을 완화한 공무원을 전보

# 1. 엄정 처리 사례

## 엄정한 신고사건 처리로 선례를 남긴 사례

-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가 최초로 형사처벌 된 사례**
  - 학부모의 부정청탁에 따라 학교 신입생 모집 전형에서 탈락한 아동을 정원 외 입학 처리  
→교장 : 벌금 700만원, 교감 : 벌금 500만원
- **외부강의 초과사례금을 받고 신고 및 반환 의무를 미이행한 공직자가 최초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례**
  - 공직자가 14회에 걸쳐 1천70만원의 외부강의 초과사례금을 수수하였으나 신고 및 반환을 하지 않음  
→과태료 500만원 부과

## 2. 부적절 처리 사례

### 금품 제공자와 수수자의 제재 불균형 사례

- **금품 제공자는 과태료 부과(수수 금액의 2배 이상)를 요청한 반면, 수수 공직자는 보다 가벼운 징계부가금을 부과(수수 금액의 1배)**
  - (사례1)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 사무국장이 해당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5만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 제공  
→제공자 : 과태료 4배(20만원), 수수자 : 징계부가금 1배(5만원)
  - (사례2) 공무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모임 비용 명목으로 금품 50만원을 수수  
→제공자 : 과태료 3배(150만원), 수수자 : 징계부가금 1배(50만원)

## 2. 부적절 처리 사례

###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미부과 사례

- **금품 수수 공직자가 자진신고 시 금품 제공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청 없이 종결하여 위반행위를 묵인**
  - (사례1) 공무원이 사무실로 온 등기 안에 제공자의 자서전과 현금 80만원을 발견하고 자진신고 및 반환  
→제공자와의 직무관련성에 대한 확인 없이 종결
  - (사례2) 공직유관단체 직원이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13.5만원 상당의 선물을 택배로 수수하여 자진신고 하였으나, 제공자 과태료 미부과

## 2. 부적절 처리 사례

### 임의적·편의적 해석을 통한 신고사건의 온정적 처리 사례

#### ▪ 일반적인 해석기준과 달리 소속 공직자등을 감싸기 위해 임의적·편의적으로 해석하여 가벼운 제재 또는 종결 사례

- (사례1) 하급공직자 4명은 각 8만5천원~6천원, 근래 자녀 결혼식을 치른 1명은 답례로 20만원을 각출하여 인사·평가·감사·상훈 등을 수행하는 상급자들에게 54만1천원 상당의 식사를 접대  
→ 소속기관 징계위원회는 답례로 낸 20만원을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접대금액에서 제외
- (사례2) 공직자가 직무관련 업체 직원으로부터 10만원의 선물용 된장을 수수  
→ 경미한 건으로 판단하여 종결

## 2. 부적절 처리 사례

### 임의적·편의적 해석을 통한 신고사건의 온정적 처리 사례

#### ▪ 대가성이 인정될 소지가 있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가 필요함에도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후 종결한 사례

- (사례1) 공직자가 평소 알고 지내던 관내 업체 대표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17.3월~7월까지 6회에 걸쳐 총 437만8천원을 식사비 등으로 사용  
→ 정직 2월, 징계부가금 2배 부과 후 종결
- (사례2) 교육공무원이 소관 행정기관에서 공모제 등에 관하여 상담 후 담당공무원의 자리에 현금 10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두고 오는 방법으로 제공  
→ 담당공무원 해임, 징계부가금 4배

## IV. 시행 2년 성과

### 1. 사회 전반의 청렴 인식 제고

“우리사회에 긍정적 영향”

87.5%

일반국민

95%

공무원

법 시행 후 부패에 대한 윤리적 민감성 증가

인식조사 결과(2018, 한국리서치), 윤리적 민감성 변화에 대한 연구 (2017, 서강대)

## 1. 사회 전반의 청렴 인식 제고

“상대방의 더치페이 제안을  
이해하게 되었다”

83.2%

일반 국민

90.1%

공무원

접대 관행 등에 대한 인식의 변화

인식조사 결과(2018, 한국리서치)

## 2. 반부패 체감 효과

“인맥을 통한  
부탁 감소”

64.4%

“직무관련자의  
접대, 선물 감소”

75.3%

인식조사 결과(2018, 한국리서치)

### 3. 기업 경영 환경 개선

상위 500대 그룹  
접대비 규모 감소

2016 상반기

1143억

15%  
감소

2017 상반기

970억

“법 시행 후 기업하기  
좋아졌다”

74%

500대기업 접대비 현황(2017, CEO 스코어), 기업인식조사(2017, 대한상공회의소)

### 4. 교육계의 촛지 관행 근절

“금품수수 관행이 근절되었다.”

89.6%

학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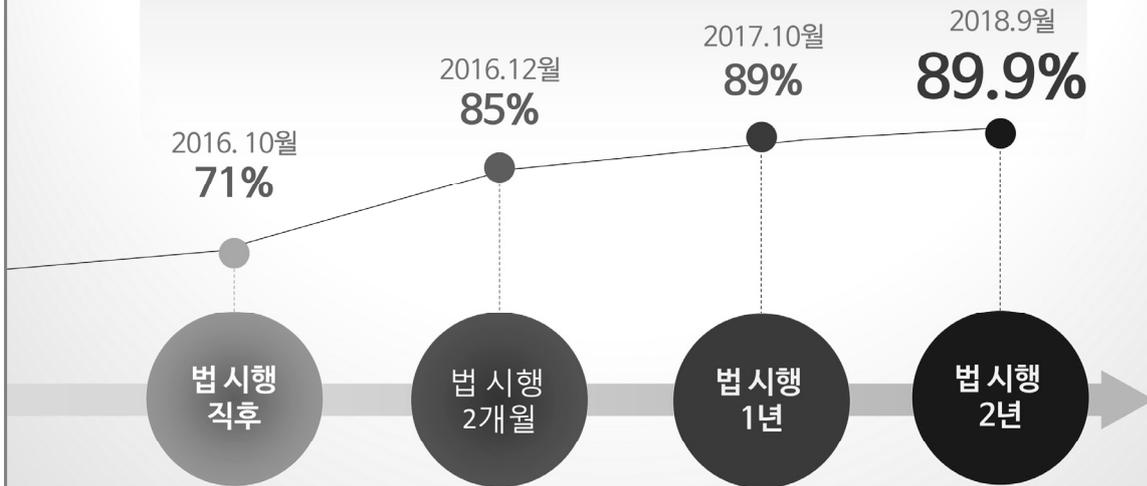
90.6%

교직원

설문조사 결과(2018, 경상남도교육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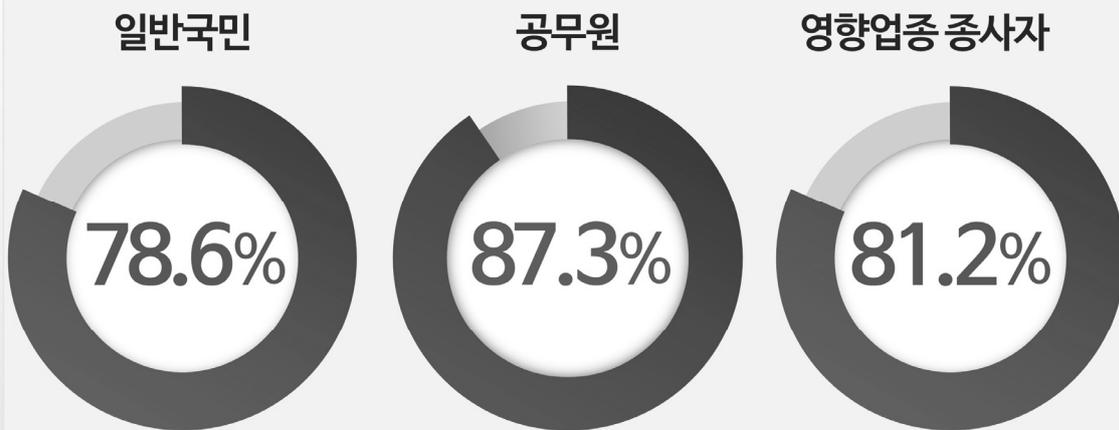
## 5. 청탁금지법에 대한 국민적 지지 확보

“청탁금지법 시행에 찬성한다.”



## 6. 시행령 개정에 대한 긍정적 인식

“농축수산물 상한액 상향 조정 잘한 일이다”



인식조사 결과(2018, 한국리서치)

# V. 판례

## 1. 부정청탁

### 인정 사실

- 청탁자 : 사립초등학교 신입생 모집 전형에서 학칙에 근거한 공개 추첨에서 탈락한 아동의 학부모
- 공직자 : 학교장과 교감에게 정원 외 추가 입학을 부정청탁

### 판 단

-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0호를 위반하여 5백만원 과태료 부과

## 2-1. 금품등 수수

### 인정 사실

- **제공자** :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 일부를 원청업체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하고 있던 업체 회장
- **공직자** : 공사를 발주한 ○○공공기관 업무 담당자
- **금 품** : '16.10.21. 현금 200만원을 수수

### 판 단

-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아 공직자에 벌금 500만원 부과

## 2-2. 금품등 수수

### 인정 사실

- **제공자** : 출판업체 직원  
**공직자** : 학교 교직원
- **내 용** : '17.10.10. 출판업체 직원이 검인정도서 홍보물을 학교 연구실에 놓고 갔다가 반환받음

### 판 단

- 홍보물 제공이 학교 교재 선정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 점, 홍보물은 폐기되는 것 외에 달리 사용, 수익 등의 방법으로 활용될만한 가치가 보이지 않아 금품 등으로서의 재산적 이익이 있다고 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기각

### 3-1. 외부강의

#### 인정 사실

- 공직자 : 공공기관 직원
- 내 용 : '16.9.29.~'17.5.25 기간 동안 14차례에 걸쳐 1,070여 만원의 외부강의 초과사례금을 수수

#### 판 단

- 초과 사례금을 수령하고도 신고하거나 반환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어 과태료 500만원 부과

### 3-2. 외부강의

#### 인정 사실

- 공직자 : 공공기관 직원
- 내 용 : '17년2월부터 8월까지 공직자등이 외부강의를 하면서 초과사례금 총 66만원을 받았으나 신고나 반환을 하지 않음

#### 판 단

- 초과 사례금을 수령하고도 신고하거나 반환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어 과태료 66만원 부과

## 4

### 인정 사실

- 제공자 : 고소인
- 공직자 : 고소사건 수사 담당 경찰
- 금 품 : '16.9.28. 고소인이 운영하는 업체의 직원을 통해 공직자에게 4만5천원 상당의 떡 1상자를 전달하였고, 공직자는 반환 및 신고

### 판 단

- 위반자가 고소한 사건이 수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고도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요하는 수사를 담당한 공직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제공자에 과태료 2배(9만원) 부과

## 5

### 인정 사실

- 제공자 : 폭행 사건 당사자
- 공직자 : 해당 사건 담당 형사
- 금 품 : '17.3.3. 공직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공직자 상의 외투 주머니에 현금 20만원을 넣어둠

### 판 단

- 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 금지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과태료 2.5배(50만원)를 부과

## 6

### 인정 사실

- **제공자** : 행정심판 청구인
- **공직자** : ○○중앙행정기관 안건 담당자
- **금 품** : '16.12.2. 공직자가 신혼여행 증임을 알고 청구인이 5만원을 우편환으로 발송하여 반환 및 신고

### 판 단

- 예전부터 친분이 있던 사이가 아니었고 행정심판 제기 후 업무관계였던 점, 제공자가 우연히 안건 담당자의 부재 사실을 문의하던 중 결혼 사실을 알게 되었던 점, 제공자는 전화통화로 우편환 발송 사실을 알리면서 업무처리를 부탁 하였던 점, 우편환 발송 전후로 업무관계가 지속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제공자 에게 과태료 2배(10만원) 부과

## 7

### 인정 사실

- **제공자** : 홍보관에 물품을 납품하는 업체의 고문
- **공직자** : 홍보관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는 업체의 과대광고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경찰관
- **금 품** : 홍보관 운영자로부터 전기렌지 구입비용 명목으로 80만원을 교부받아 위 경찰관의 집에 시가 80만원 상당의 전기렌지를 설치

### 판 단

- 청탁금지법 제8조제5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
- 제공 금품의 가액, 제공 경위, 위반사실 전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태료 2배(160만원) 부과

## 8

### 인정 사실

- 제공자 : ○○기초자치단체 마을 이장들 71명으로 구성된 이장협의회 회장
- 공직자 : ○○기초자치단체장에 재직하다가 다른 기초자치단체로 발령받은 자
- 금 품 : 송별 행사에서 이장협의회 명의로 현금 30만원이 든 봉투를 전별금 유사 명목으로 전달

### 판 단

- 금전은 선물에 포함되지 않고, 여러 사람이 상호 합의 하에 돈을 모아 공동으로 제공한 경우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 과태료 2배(60만원) 부과

## 9

### 인정 사실

- 제공자 : 협회조합장 및 간부
- 공직자 : △△기초자치단체 의원들
- 금 품 : 식당의 방에서는 공직자들과 제공자들을 포함한 16명이 총 54만1천원의 음식물과 주류를, 중앙의 홀에서는 공직자의 수행원과 제공자 직원 등 6명이 총 9만2천원의 식사를 하여 총 63만3천원을 결제

### 판 단

- 제공자와 공직자는 각종 조례 제정 직무와 관련하여 직무관련성이 인정됨
- 위반자들과 그 외 직원들이 각자 분리된 공간에서 식사를 한 점, 주문한 음식 종류가 다른 점, 참석자들의 지위와 역할을 나누어 구성원을 달리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위반자 16명은 1인당 33,812원을 제공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
- 각 위반자들에게 약 2배의 과태료(7만원) 부과

## 10

### 인정 사실

- 제공자 : 대학교 ○○학과 재학 중인 학생
- 공직자 : 대학교 ○○학과 조교수(지도 및 성적 평가)
- 금 품 : 생일 축하를 위해 3만~4만원을 각출하여 3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3만원 상당의 케이크, 1만원 상당의 꽃다발 교부

### 판 단

- 학생에 대한 지도·평가를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담당교수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동아리 지도교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생일파티 기획, 대학교 1학년 학생에 불과하여 법 위반에 대한 인식의 거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과태료 2배 부과

## 11

### 인정 사실

- 제공자 : 직무관련자인 ○○공공기관 직원, 공사 수급인의 현장대리인
- 공직자 :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 감리 담당자(공무수행사인)
- 금 품 : '16.10.11. 4차에 걸쳐 공직자에게 21만원 상당의 식사 및 음주를 제공

### 판 단

- 4회에 걸쳐 금품 등을 제공받은 점은 과태료 가중 사유로 고려할 수 있으나, 공직자가 '16.10.26. 공사수급인에 28만7천원을 반환한 점, '16.11.7. 위반사실을 자진신고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공직자에게 과태료 50만원 부과

## 12

### 인정 사실

- 제공자 : ○○기초자치단체에 보도블럭을 납품하는 업체 대표
- 공직자 : ○○기초자치단체 이면도로관리 업무 담당
- 금 품 : 12만 8천원 상당의 식사 등 5회에 걸쳐 812,125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

### 판 단

- 과태료 3백만원 부과

## 13

### 인정 사실

- 제공자 : ○○지원 관내 변호사
- 공직자 : ○○지원 소속 판사
- 금 품 : '16.10.30. 공직자가 가족과 함께 식사한 식사대금 3만원 중 2만8천원을 공직자가 모르는 상태에서 대신 지불

### 판 단

- 제공자에 과태료 4배(11만2천원) 부과

## 14

### 인정 사실

- 제공자 : 월간지를 발행하는 회사의 직원
- 공직자 : 공공기관 홍보실 광고업무 담당자
- 금 품 : 광고게재 관련 면담 후 24만원 상당의 연극초대관람권 6매를 우편으로 송부

### 판 단

- 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24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였고, 광고게재를 청탁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해진 것으로 법 제8조제3항제7호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과태료 2배(48만원) 부과

## 15

### 인정 사실

- 제공자 :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자 재시험에 불합격하여 다시 응시한 사람의 배우자
- 공직자 : ○○교육원 소속 직원
- 금 품 : 줌 도와 달라는 취지의 편지와 함께 10만원 상당의 구두 상품권을 동봉하여 제공하였고, 이에 대해 공직자는 반송 및 신고

### 판 단

- 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 금지 금품을 제공하고, 법 제8조제3항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 없음
- 과태료 3배(30만원) 부과

## 16

### 인정 사실

- 제공자 : ○○기초자치단체 관내의 건축사무소 운영자
- 공직자 : ○○기초자치단체 도시건축 관련 부서 직원
- 금 품 : 함께 골프를 친 후 13만원 상당의 골프비용을 대납

### 판 단

- 제공자는 ○○기초자치단체 관할 건축 인허가 및 건축사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와 직무관련성이 인정됨
- 따라서 골프 접대를 제공하는 것은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 공무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여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과태료 2배(26만원) 부과

## 17

### 인정 사실

- 제공자 : ○○공공기관의 A구축사업 관련 용역업무를 수행하다가 용역계약의 해지를 통보 받은 업체 대표이사
- 공직자 : 위 용역계약의 감독기관인 △△중앙행정기관 직원
- 금 품 : 면담을 하고자 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자 위 공직자를 수신자로 한 편지와 2만5천원 상당의 구움선물셋트를 두고 갔고, 공직자는 이를 반환 및 신고

### 판 단

- 편지에 ○○공공기관으로부터 일방적 계약해지를 당하였으므로 위 용역계약을 연장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
- 민원 해결을 청탁하면서 금품을 제공한 행위는 그 가액이 2만5천원에 불과하더라도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없으므로 과태료 2배(5만원) 부과

## 18

### 인정 사실

- **제공자** : 급식재료 납품 업체의 품질부장
- **공직자** : 납품 대상 고등학교의 영양교사
- **금 품** : 급식용 찐빵에 곰팡이로 추정되는 이물질 발견 민원에 대한 해명을 하면서 소매가 71,820원 상당의 만두 1박스 제공

### 판 단

- 영양교사는 급식재료의 검수·평가를 상시적으로 수행하므로 직무관련성이 있음
- 제공한 만두의 가액이 5만원을 미세하게 초과하거나 출고가격이 이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영양교사에 대한 납품업체 직원의 선물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과태료 10만원 부과

## 19

### 인정 사실

- **제공자** : '17.2.2. 산업재해로 인한 최초 요양급여 신청을 하여 2. 10. 산업재해 요양급여 승인결정을 받은 사람
- **공직자** : 요양급여 승인 업무 담당자
- **금 품** : '17.2.21. 소포로 시가 9,700원 상당의 식혜 1박스를 발송

### 판 단

-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에게 9,700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고, 법 제8조제3항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어 과태료 약 2배 (2만원) 부과

 인정 사실

- 제공자 : 대학교 졸업생 1인, 강사 5인
- 공직자 : 대학 교수
- 금 품 : 각 20만원의 축의금을 제공

 판 단

- 법정한도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조사비 수수
- 청첩장 배포를 넘어 메신저 배경화면 공지, 모바일 청첩장 및 계좌번호 전송으로 직무관련자들에게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여지를 만든 점, 위반자의 자발적 반환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과태료 3배(360만원) 부과

---

## VI. 해석 사례

---

## 1. 적용대상

### 사례 1

대학교 겸임교원, 명예교수 및 시간강사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지

### 답변 1

- 「고등교육법」제17조는 겸임교원, 명예교수, 시간강사를 ‘교원 외’로 구분하고 있고, 직원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1. 적용대상

### 사례 2

사립대학교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는 A가 같은 대학교 교수는 아니지만 해당 대학병원이 소속된 대학교 학교법인과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지

### 답변 2

-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다목에 근거하여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직원은 공직자등에 해당
- A는 해당 대학교 학교법인 임직원으로서 적용대상에 해당

## 1. 적용대상

### 사례 3

민간기업에서 자사의 사외이사로 위촉한 국립대학교 교수 A를 내부 체육행사에 초청하여 체육복 등 금품등을 제공했다면 법 위반인지

### 답변 3

- 공직자등이 민간기업 사외이사의 지위에서 금품등을 제공받는 경우에도 공직자등의 지위를 겸하고 있으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회에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등을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

## 2. 부정청탁

### 사례 1

학부모 A가 학교운동부 지도자에게 자녀의 성적을 몰래 올려달라는 부정청탁을 하였으나, 해당 지도자는 청탁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제재대상이 되는지?

### 답변 1

-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의 실현 여부와 무관하게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음
-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A는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음

## 2. 부정청탁

### 사례 2

제3자가 A를 학교운동부지도자로 채용되도록 하기 위해 해당 학교장에게 부탁하는 경우 법 위반인지

### 답변 2

- 제3자가 A의 채용에 관하여 법 제5조제1항제3호의 부정청탁을 학교장에게 하고, 학교장이 그에 따라 A를 채용한다면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음
- 다만 제3자의 부탁이 단순히 추천의 의미를 갖는 정도였고, 학교장도 법령을 위반하거나 권한을 벗어남이 없이 채용절차를 진행하여 A가 채용되었다면 위반행위가 아닐 수 있음

## 2. 부정청탁

### 사례 3

○○시에서 추진하는 ‘공공기관 대학생 인턴사업’에 참여하여 성실히 근무를 완료한 학생에 ○○시 부서 또는 기관 명의의 추천서를 발급하는 것이 법 위반인지

### 답변 3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업추천서 제출 자체를 곧바로 부정청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 다만,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취업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법 제5조제1항제3호의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음

### 3. 금품등 수수

#### 사례 1

논문심사가 최종 완료되고 졸업을 앞둔 대학원생이 지도해준 교수님 몇 분을 모시고 선물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 법 위반인지

#### 답변 1

-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지도교수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청탁금지법상 허용되기 어려움
-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사일정 등이 종료된 졸업 후 제공하는 금품등은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3. 금품등 수수

#### 사례 2

법 적용대상인 대학교수가 공공기관의 사외이사로 근무하다가 임기가 만료되어 공공기관에서 퇴직 예정인 경우, 공공기관에서 100만원을 초과하는 기념품 지급이 가능한지

#### 답변 2

- 공직자등이 퇴직하기 전에 제공받는 금품등이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금품등에 해당할 경우 법 제8조제3항 제1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것으로 보임

### 3. 금품등 수수

#### 사례 3

제약회사가 제품설명회를 실시하면서 대학병원 교수 A에게 5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다면 법 위반인지

#### 답변 3

- 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제공되는 금품등이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제공되는 경우라면 허용될 수 있음  
※ 예 : 「의료법」 제23조의3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및 별표2의3에 따라 정한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 4. 외부강의

#### 사례 1

국립대학교 법대교수로 재직 중인데,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논문심사 등 요청이 들어오거나 서면으로 법률자문 요청을 받은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 답변 1

- 법 제10조에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강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여야 함
- 논문심사나 서면자문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회의형태에도 해당하지 않는 논문심사나 서면자문은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음

## 4. 외부강의

### 사례 2

사립학교 교직원은 사례금 상한액이 시간당 100만원인데, 1시간 30분을 진행했을 경우 총 200만원을 줄 수 있다는 의미인지

### 답변 2

-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시간당 100만원이며, 별도로 총액 제한을 두지 않고 있음
- 질의한 내용의 경우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할 것임

## 4. 외부강의

### 사례 3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외부강의를 요청한 기관에서 사례금 40만원을 주기로 한 경우 세전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세후로 계산해야 하는지

### 답변 3

-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공직자등이 실제로 수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세전으로 계산해야 함

# 청렴한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청탁금지법이 만들어갑니다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Memo*



*Memo*



*Memo*



